

-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-

『**유형②**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 전시 지원』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역 미술 생태계 활력 제고와 미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<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 전시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에 참여할 '전시단체'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I 공모 개요

유형②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 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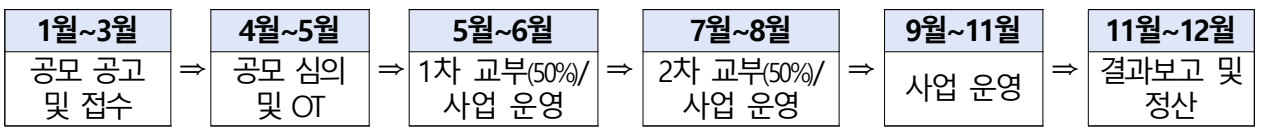
- 서울 외 인구감소(관심)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전시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 미술 생태계 활력 제고와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.
-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제형(리서치형) 전시 기획 또는 공공·민간의 후원/협력을 확정한 경우 우대 선발합니다.
- 유형1~2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사업수혜는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공 모 명) **유형②**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 전시 지원
- (접수기간) **공고일~2025년 3월 12일(수), 17:00까지**
- (공모방식)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시행 및 접수, 운영
- (지원대상)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
- (지원내용) 전시 및 부대행사 기획·설치·운영 등 직접경비
- (전시사업기간) 2025년 5월 1일(목) ~ 11월 30일(일)
- (지원규모) **①~②**유형 통합 총 42억원, 유형별 약 30건 내외 선정
 - 국고보조금은 건당 5천만원/7천만원/1억원 내 정액 차등 지원
 - 구간별 정액 지원, 신청주체는 1개 구간 선택 가능
 - 자부담금은 국고보조금의 20% 필수 포함

구분	국고보조금(A)	자부담금(B)	총사업비(A)+(B)
1구간	50,000,000원	10,000,000원	60,000,000원
2구간	70,000,000원	14,000,000원	84,000,000원
3구간	100,000,000원	20,000,000원	120,000,000원

* 총사업비는 공급가액을 기준하며, 면세·고유번호증 등은 부가세 포함 지원 가능

- (참고) 추진일정 * 추진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


세부 내용

○ (지원자격)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(기업) ※ 단체(기업)의 소재지역은 무관
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3년간('22~'24년) 신청주체가 주최·주관한 시각예술 전시개최 실적 1건 이상 보유 •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·민간의 영리·비영리 단체 ※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지원 수혜는 유형 무관 연간 1회로 한정함.
지원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각예술(미술) 전시에 한정 • 작가(국내외)/작품(장르) 등 제한 없음 • 전시장소 제한 없음 • 전시전용면적 350㎡(약 100평) 이상의 공간만 지원 가능
지원불가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/박물관 •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 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•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•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•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 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 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• 「예술인근로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•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•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지원 불가능 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 전시 개최 불가 • 인구감소(관심) 지역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역 외 전시개최 불가 •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• 복제(레플리카) 전시

○ (지원조건)

※지원조건외 필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며, 기준 불충족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필수	권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괄기획자 선임 *지원단체 내에서 총괄기획자 선임 가능 자부담금 20% *신청한 국고보조금의 20%를 자부담금으로 포함 설치·철수, 휴관일 제외 45일 이상 전시개최 인구감소(관심)지역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역 내 전시공간 선정 전시전용면적 최소 350㎡(약 100평) 이상 전시해설프로그램 최소 20회 이상 운영 전시장 인근 관람 유도 홍보물 설치 지역주민·산단근로자 참여프로그램 5회 이상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예술인(작가·기획자) 연계프로그램 운영 유료 전시(*인구감소(관심)지역 한정) *입장료 수익금 발생 시,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 (사전 계획서 제출/승인 必) *고유번호증 단체는 유료 전시 수행 시,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

전시 개최 가능 지역 ※별첨1.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참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감소(관심) 지역 :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 지역(89개) + 인구관심 지역(18개) 한정 국가산업단지 지역 :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산업단지 41개 지역 한정

○ (우대사항)

-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 후원/협력(예산, 홍보, 공간 등) 시 우대
- 지역 의제형(리서치형) 전시 기획 시 우대

○ (지원내용) 전시 및 부대행사 기획·설치·운영 등 직접경비

- * 사업비(국고+자부담금)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부가세는 지원금으로 편성 불가
- *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일 경우 심의시 축소·조정될 수 있음
- * 지원항목의 유의사항 위반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

목	세목	지원항목(국고보조금/자부담금)	유의사항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여작가 사례비 외부인력 사례비 (외부기획자, 강사, 학술행사, 통번역) 재료비(일회용품) 	단, 외부기획자는 총사업비의 10% 초과 책정 불가
	공공요금및 제세(0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(전시장, 전시작품 등) 	
	임차료(0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차료(전시관/전시물품 등) 	
	일반용역비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간연출(설치/철수) 용역비 작품관리(반입/반출) 용역비 전시장 지킴이 등 인력대행 용역비 전시 홍보, 광고 등 대행용역비 기타 전시운영에 필요한 대행용역비 	
※ 주의) 사례비를 제외한 항목은 (세금)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, 인적용역 계약 불가			

지원 불가항목	
지원단체의 경상비	•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
자본적 경비	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등
업무추진비	•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
전시 준비비	•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, 숙박, 유류대 등
기타	•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
III 공모 접수

- (접수기간) **공고일~2025년 3월 12일(수), 17:00까지**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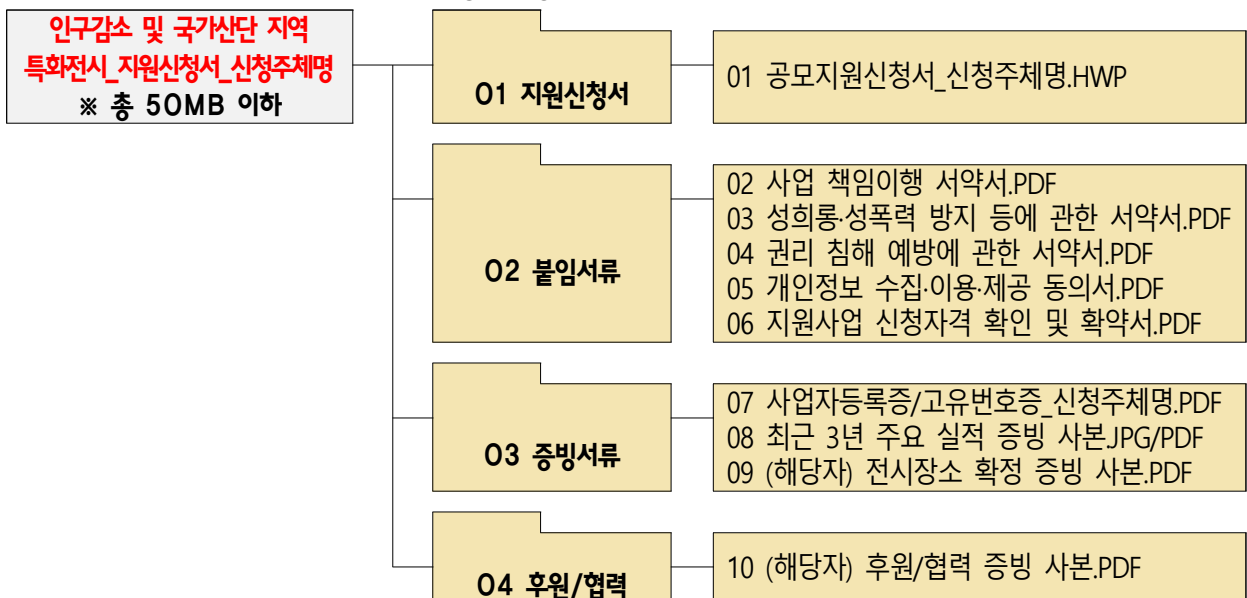


*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 (이용문의 : 1670-9595)

○ (제출서류)

순번	제출서류	파일형식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-	e나라도움에서 작성제출
2	공모지원신청서 *PDF 제출 불가	hwp	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*총50MB 이하
	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PDF	
	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PDF	
	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PDF	
	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	
	[붙임5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PDF	
3	(해당자) 주요실적, 전시장소, 후원·협력 증빙 사본	PDF	
4	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	PDF	
(참고)	PT(면접) 발표자료(서류심의 결과공고 후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안내 예정)		

○ (e나라도움 첨부파일 등록방법) *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 정리방식 준수하여 제출



○ (신청 유의사항)

- 제출서류는 반환수정 불가능, 서류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작성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 혹은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내용 불이행 시 사업 제외 및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은 지양하여야 함
- 자부담은 정률에 맞춰 필수 책정하며, 1차 지급분 중간정산시 자부담 전액 소진을 원칙으로 함
- 자부담을 타당한 사유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사업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.
-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지출 불가하므로, 반드시 공급가액으로만 총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
- 총사업비는 전시사업기간(5~11월) 내에 사용 가능, 사전 및 사후 활용은 불인정함
-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 해지를 금지함
- 지원기간 동안 사업체는 유지해야하며, 기간 내 휴·폐업 시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사업 운영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보조금법)»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예술인 복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
○ (참고) 참여단체(기업) 의무사항

- 서울을 제외한 지역 전시 기획·개최·운영
- 참여작가의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체결
-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, 성과공유회 등 참석
-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자부담금은 전액 소진 및 회계검사·정산
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신고
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수료 및 서약서 제출
-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표기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 순)
- 전시기간 중 관람객 대상 만족도조사 필수 진행 및 결과 제출 (최소 200명 이상 참여)
- 전시기간 중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시 협조
- 시각예술시장조사*(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설문 응답 필수
- 전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
-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변경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- 총사업비는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

IV

공모 심의

○ (심의일정) 3월 3주~4월 2주

유형②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지역 특화 전시		
(3월 3주~4주) 행정심의	(4월 1주) 서류심의	(4월 2주) 면접심의/선정
서류/조건 등 결격확인	1.5배수 내외 심의 및 발표	면접심의 및 최종선정 ※ 발표는 총괄기획자가 수행 필수

* 일정 및 심의방식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* 결과는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

○ (심의방법)

- 1차 서류심의

- 2차 면접심의(총괄기획자 1인의 단독 PT/인터뷰 수행, 참관 불가)

○ (심의기준)

심意指표	비중	내용
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40%	-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미술향유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모객 계획의 충실성 - 안전사고 예방, 사회적약자를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 계획의 구체성
신청주체 역량	30%	-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 -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
사업 기대효과	30%	-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-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

V

사업문의

○ 사업 문의

- (이메일) arts@gokams.or.kr

- (전화) 02-708-2281, 02-2098-2927

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(*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○ e나라도움 이용 문의

- (전화) 1670-9595

- **(지자체·공공기관·민간기업 등 후원/협력 시 우대)**
 - 지원신청서 제출 시 후원/협력 확정증빙을 제출한 경우, 심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우대
- **(지역 의제형(리서치형) 전시 기획 시 우대)**
 - 선택한 전시지역의 문화, 역사 등을 고려한 전시 기획을 말함.
 - 지역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시 기획 시 우대
- **(전시장소)**
 - 인구감소(관심)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전시공간은 국·공·사립 미술관 및 보유공간, 복합문화공간 등 모두 가능하나 전시전용면적은 100평 이상 필수
 - 특히,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반드시 단지 내에서 전시할 필요 없이 소재지 내 면적 기준이 맞는 공간에서 개최 가능하며, 산업단지 근로자 모객(참여)프로그램 안내 필수
 - ※ 보유공간은 신청주체가 보유/임차 중인 공간을 뜻하며, 사업비에서 대관료 편성은 불가능함.
- **(전시기획)**
 - 전시 참여작가, 작품, 장르의 별도 제한 없으며, 기 운영된 전시도 참여 가능함.
 - 단, 관례적인 회원(단체)전,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, 복제(레플리카) 전시 등 지원 불가
- **(전시 운영기간)**
 - 전시개최 및 운영은 작품 등의 설치·철수 일정 제외 주말을 포함하여 45일 이상 필수
 - ※ 전시공간의 자체휴관일도 운영일에서 제외하여야 함.
- **(총괄기획자)**
 - 전시 기획·운영 등의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, 외부 전문가 중 선임할 수 있음.
 - 단, 신청주체의 내부 소속인력이 총괄기획자인 경우 사업비에서 기획인건비 지급 불가
 - ※ 총괄기획자는 추후 면접심의에서 PT발표 필수
- **(자부담금)**
 - 신청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해야 함.
 - 신청 구간에 따른 자부담금액은 정률이며, 잔액 없이 100% 소진을 필수로 함.
- **(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)**
 - 전시장 방문객을 위한 전시해설(도슨트) 프로그램을 말하며, 대면을 원칙으로 함.
- **(지역주민·산단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)**
 - 선택한 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혹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방문독려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말하며, 프로그램의 형태는 제한 없음. (아티스트 토크·네트워킹·교육·강연 등 형태 무관)
- **(지역 작가·기획자 매개 프로그램)**
 - 전시 개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·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말함.
 - 프로그램의 형태는 제한 없음. (아티스트 토크·네트워킹·교육·강연 등 형태 무관)

• (입장료)

- 입장료는 무료/유료 선택 가능하며, 유료 전시를 권장함.
 - 입장료로 인한 수익금 발생 시 전시 관련 자체 사업에 활용 가능함.
 - 단, 수익금 활용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필수
- ※ 신청주체가 비영리(고유번호증 보유) 유형인 경우, 입장료 수입은 해당 전시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함.